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외 1인

2. 찬 성 자: 김영길 의원 외 4인

3. 제안이유

-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 등 청소년 도박 중독 대상 특화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4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제33조, 제34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실시 및 확대를 위해 관련사항을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안 제4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¹⁾에 따른 정신건강증진계획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스마트폰의 발달로, 게임과 도박의 경계구분이 없어지는 게임 콘텐츠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도박 또는 유사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중독 피해 학생의 현황 파악과 맞춤형 치료를 위해 학교, 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1회성 캠페인에 한정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평가지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